

## 운용관리계약서 변경대비표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개 인 형 I R P	<p>[본문]</p> <p>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p> <p>회사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p> <p>- 부칙 &lt;2024.4.1. 개정&gt; -</p> <p>제1조(시행일)</p> <p>이 계약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p> <p>[부속협정서]</p> <p>제3조 (수수료의 징수)</p> <p>3의3.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p> <p>가. 가입자가 전자매체(온라인웹 또는 모바일)를 통해 회사와 운용관리계약 체결시 계좌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한 경우</p> <p>나. 가입자가 전자매체(온라인웹 또는 모바일)만을 통해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p> <p>3의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연금수령개시 가입자에 대해 연금수령개시된 날부터 수수료를 20% 할인하여 적용합니다.</p>	<p>[본문]</p> <p>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p> <p>① 회사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p> <p>1. 가입자가 전자매체(온라인웹 또는 모바일)를 통해 계좌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한 경우. 다만, 관리점 변경 신청으로 계좌관리점이 다이렉트로 변경된 경우 관리점 변경일 전까지 부속협정서 제3조에 따라 발생한 운용관리수수료는 징수합니다.</p> <p>2. 가입자가 전자매체(온라인웹 또는 모바일)만을 통해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p> <p>- 부칙 &lt;2024.9.9. 개정&gt; -</p> <p>제1조(시행일)</p> <p>이 계약서는 2024년 9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p> <p>[부속협정서]</p> <p>제3조 (수수료의 징수)</p> <p><del>3의3.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del></p> <p><del>가. 가입자가 전자매체(온라인웹 또는 모바일)를 통해 회사와 운용관리계약 체결시 계좌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한 경우</del></p> <p><del>나. 가입자가 전자매체(온라인웹 또는 모바일)만을 통해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del></p> <p>3의3.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연금수령개시 가입자에 대해 연금수령개시된 날부터 수수료를 20% 할인하여 적용합니다.</p>	<p>조항 변경</p> <p>(수수료 면제 조항을 부속협정서에서 본문으로 이동)</p> <p>관리점 변경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반영</p> <p>시행일 변경</p> <p>조항변경에 따른 삭제 (본문 제12조 제2항으로 변경)</p> <p>조항변경</p> <p>(3의4 -&gt; 3의3)</p>

구분	현행	변경	비고
	3의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일별 수수료 계산시점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의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일별 수수료 계산시점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조항변경 (3의5 -> 3의4)

## 자산관리계약서 변경대비표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개 인 형 I R P	<p>[본문]</p> <p>제13조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p> <p>-부칙 &lt;2024.4.1. 개정&gt;-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p>	<p>[본문]</p> <p>제13조 (자산관리수수료) ①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1. 가입자가 전자매체(온라인웹 또는 모바일)를 통해 계좌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한 경우. 다만, 관리점 변경 신청으로 계좌관리점이 다이렉트로 변경된 경우 관리점 변경일 전까지 부속협정서 제2조에 따라 발생한 자산관리수수료는 징수합니다. 2. 가입자가 전자매체(온라인웹 또는 모바일)만을 통해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p> <p>-부칙 &lt;2024.9.9. 개정&gt;-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9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p>	<p>조항 변경 (수수료 면제 조항을 부속협정서에서 본문으로 이동)</p> <p>관리점 변경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반영</p> <p>시행일 변경</p>

구분	현행	변경	비고
	<p>[부속협정서] 제2조 (수수료의 징수)</p> <p>3의3.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p> <p>가. 가입자가 전자매체(온라인웹 또는 모바일)를 통해 회사와 자산관리계약 체결시 계좌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한 경우</p> <p>나. 가입자가 전자매체(온라인웹 또는 모바일)만을 통해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p> <p>3의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연금수령개시 가입자에 대해 연금수령개시된 날부터 수수료를 20% 할인하여 적용합니다.</p>	<p>[부속협정서] 제2조 (수수료의 징수)</p> <p><del>3의3.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합니다.</del></p> <p><del>가. 가입자가 전자매체(온라인웹 또는 모바일)를 통해 회사와 자산관리계약 체결시 계좌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한 경우</del></p> <p><del>나. 가입자가 전자매체(온라인웹 또는 모바일)만을 통해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del></p> <p>3의3.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연금수령개시 가입자에 대해 연금수령개시된 날부터 수수료를 20% 할인하여 적용합니다.</p>	<p>조항변경에 따른 삭제 (본문 제13조 제2항으로 변경)</p> <p>조항변경 (3의4 -&gt; 3의3)</p>